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7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8)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8)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7)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4)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0)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2)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상정된 안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 2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 2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8) ..... 2

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	2
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8) .....	2
6.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4) .....	2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	2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3) .....	2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7) .....	3
10.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4) ....	3
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0) .....	3
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2) .....	3
1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0) .....	3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	3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	3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	3

---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8)
  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8)
  6.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4)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3)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7)

10.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4)

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0)

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2)

1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0)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페이지,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 대하여만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 숙소, 즉 관사 더하기 독신자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게도 이를 제공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독신자숙소의 명칭을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서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거지원계정은 자체적인 수입원이 없음에 따라 여유자금 등의 부족으로 25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재원을 예외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집행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에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주거지원계정의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실제 독신자숙소를 이용하는 군인 중에는 미혼 간부 외 근무지 등을 이유로 하는 기혼별거 간부 등도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간부숙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국방부와 기재부 모두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에 대한 것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주거지원계정을 확충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 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의, 저희 자체 수입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자금들을 지원받아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제한이 돼서 인원도 좀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원들에 대해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한 200억 이상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소요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신숙소, 그러니까 기혼·미혼 간부들에 대한 독신숙소는 26년까지 그리고 1인 1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후년 많은 재원이 투자되니까 그걸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을 관사와 독신자숙소까지 확대하자, 할 수만 있으면 해 주면 좋은데 방금 국방부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주거지원계정의 확충이랄까 이 부분들을 현실을 감안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간부숙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이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독신자숙소는 이게 언제까지 전부 100% 완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26년 말로 확충되고, 올해 한 92% 확보되고요 내년에서 한 94, 26년까지 해서 100% 확보할.....

○**소위원장 부승찬**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된 사안.....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가장 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박선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2026년까지 100% 한다는 말씀은 2027년부터는 가능하다 이런.....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숙소로 이름을 바꾸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2026년까지는 100%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러니까 간부숙소로 용어 변경하는 거야 별 문제는 아닌데 그 이후로 들어가는 자금은 지금 하시는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가 들어가느냐 하는 걸 좀 질문드리는 건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현재 민간주택 임대자금들은 기혼 간부들 위주로, 지금 여기 김병주 의원님이 하신 것은 독신, 미혼 간부들이 숙소를 제공받지 못해서 나가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것은 26년까지는 공관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27년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박선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까지 미혼 간부들도 숙소 문제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법이 굳이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8페이지, 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이 철도 등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받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군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현재는 병사들을 중심으로 철도요금을 할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장교,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군인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의 문제와 다른 공무원, 예컨대 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철도와는 달리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현재 군인에 대한 할인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까지 군인 할인제도를 확대할 경우에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재정 상황과 할인제도 운영에 따른 해당 운영자의 손실 부분에 대한 국가의 부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모두 다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국방부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황희 의원님이 이 제정안을 발의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인 대상으로 하는 교통 관련 할인제도가 상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할인을 적용했을 때 그 할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의 할인제도를 보면 철도·버스·선박·항공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다양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은 저희들이 최소한 5~10%,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30%,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2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할인제도로도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그게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을 전액 할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할인율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 30% 할인율만 적용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은 한 500억 정도가 더 국가 재원으로, 국방 재원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준 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황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초급간부로 한정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병들만 되고 있는 것을?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초급간부는 아니고 그냥 간부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초급간부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한 30%…… 간부들 대상으로 했을 때 30% 하면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한 150억 이상 정도에서, 이 정도가 대략 판단은 가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지금 만약에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국방 예산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게 국방 예산에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할인을 부담하는 측에서, 국토부나 지하철공사 이런 데서 그걸 부담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쪽에서 다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국방 지원에서 들어가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가장 인용하는 빙도가 높은 공공 도로망이라든가 교통망에 대해서는, 아까 초급간부 1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 초급간부를 하면 한 30%니까 150억 정도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실제 우리 군인들이 업무상 또는 상대적으로 이용 빙도가 높은 버스 같은 것 말고 어떤 공공성이 있는 운송체계를 활용하면 좀 덜 들지 않을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 지원에 관련된 것은 간부들 대상으로 하면요 교통보조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계급별 다 나가고 있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돼서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후불 지원이라고 해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출장비로 이미 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할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박선원 위원** 그것은 좀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런 영역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교통, 그게 얼마 나가지요? 교통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간부 교통보조비는 계급별로 다른데 대위에서 중령급 하면 14만 원 나갑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6페이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 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평택시가 추진하는 현충시설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평택시의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현충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국가보훈부와 현충시설 지정 등의 협의, 기획재정부와의 보조금 지급 예산 관련 협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직접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고, 협행법상 사실 이것은 지원하기가 어려운 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게 된다면 보조금 관리 관련된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선행되고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것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혹시 기획재정부 나와 있습니까?

심의관님, 의견 말씀……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입니다.

동 사안은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방이양을 하면서 같이 재원을 넘겨주는 것을 2005년부터…… 2005년에도 하고 10년, 몇 차례 해 왔는데요. 이 현충시설은 2005년도에 저희가 지방이양을 할 때 그때 163개 사업을 지방으로 넘겨줬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현충시설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과 함께 1.1조 원 정도 되는 그 당시의 사업과 함께 저희가 재원을 교부세를 더 많이 올려서, 이양된 것보다 더 많이 그때 지방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이양사업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보훈부 나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 김석기** 예.

○**소위원장 부승찬** 직책과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보훈문화정책관 김석기**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김석기입니다.

보훈부의 의견은, 사실 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지자체에 현충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법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이것은 사실 아주 좋은 취지거든요. 캠프 험프리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주한미군들 전사한 추모시설이라든가 또는 추모비 이런 것들을 공원화해서 주한미군들 또 6·25 전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상기하고 보게 하기 위한 그건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에 캠프 험프리스 이전할 때도 여기 보면 주한미군사령부하고 미8군사령부 사이에 한 10억 원 들여서 이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법이 안 된다 해서 그것 모금하는 데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것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 당시 브룩스 사령관하고 이런 민간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캠프 험프리스 내려가 보면 그 주변에 거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캠프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주한미군들에게 한국에서 이렇게 계속 추모도 한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방법을 찾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전에 따른 평택시 특별법 안에 이걸 넣어서 하는 방법을 저한테도 상의를 했었는데, 이병진 의원인가요, 했는데 그런 방법을 저도 조언을 해 줬는데, 하는 방법이 없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로 넘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국고금 지원으로 다시 환원하면 최초의 보조금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지금 까지 했던 것하고는 좀 역행이 되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국고로 지원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립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게 지자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 부처가 반대하니까 오늘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각 부처에서도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온 김에, 이것과 약간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미군들이 캠프 험프리스로 가서 보면 시설이 아주 좋다 보니까 밖으로 잘 안 나와서 캠프 험프리스에 근무하고도 한국을 잘 모르고 복귀하는 인원들이 많아요. 한미동맹을 견인했던 그룹은 지금까지 6·25 참전 용사분들이었는데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생존하신 분이 적기 때문에 한국에 근무했던 분들을,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분들을 친한 세력으로 만들면 한미동맹을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지자체에서 투어 프로그램, 서울시에서도 만들고 LG에서도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예산 지원을 하자 해서 그때 예산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한 4박 5일이든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예산을 100억을 반영했었는데 18억이 반영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역하고 팬데믹이 오면서 됐는데, 그것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지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직을 운용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연합사에 아예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그것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있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숙지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확인하셔 갖고 이 건립 사업이나, 지금 험프리스가 내려가고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한미동맹을 지속시키는 방안 중에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주한미군들을 근무하는 동안에 어떻게든 한국을 이해시키고, 그러면 당장 전투력과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미래 한미동맹을 견인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국방부가 좀 전향적으로 하고, 보훈처는 특히 여기에 직접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한국전쟁 시에 미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현충 시설을 한미동맹의 상징인 험프리스에 설치하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김병주 위원도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했는데, 다만 지금 법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지방이양 사무로 해서 2005년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국고는 안 된다, 그런데 보훈부에서 한번하겠다고 생각하면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26조 4항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현충 시설에 대해서는 보훈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자체에서 또 그걸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훈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4 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플러스 해서 지자체 쪽을 좀 설득하고 해서 반반 이렇게 해 가면 갈 수 있는 게, 안 하려고 생각하면 자꾸 문제를 삼지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풀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제가 월남전 참전자들 명비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추진했을 때 정부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나 뭐 다 똑같으니까…… 오늘 법안 심의하는 데다가 중점을 둬야지, 다른 사족을 붙여 가지고 시간을 딜레이 하지 말고요. 제가 봐서 이것은 정부도 지금 입장이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보류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저도 사족을 붙이는 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12년 전에 2012년 기자 시절에 제가 꾸려 가던 포럼이 주도해서 정전 협정 이후에 순직한 주한미군하고 카투사 추모비를 건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좋은 일 하기도 참 힘들구나’, 미군들이 기부받는 것 김병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른 보훈시설 만드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좀 폭넓게 넓은 인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원 위원** 저도……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택시나 지역 예산에 따르면 56억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약 1500평에다가 추모 시설을 넣는 것이고, 이것은 험프리스 기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에 만들었으므로써 험프리스에 왔던 미군 병사들이 여기를 들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보통 로테이션을 얼마나 하지요? 6개월에 한 번 합니까, 12개월에 한 번 합니까? 주로 평택 험프리스에 온 주한미군들의 로테이션 기간이……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대체로 6~10개월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한국에 온 미군 병사들이 평택시 내에 있는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 시설을 한번 왔다 가는 것하고 그냥 영내에서, 험프리스 기지에서만 생활하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6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설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시비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평택시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보조금 관리 법률이 아닌 평택시 특별법, 그러니까 평택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것과 연관된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게 법률적인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이 운용적 차원에서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보훈부 또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보훈부에서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보훈부 랑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매 청편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훈 기본법 26조 4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4페이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 시행 이전인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사병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첫째, 그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면 군인연금법에 따른 신규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또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산입된 사병복무기간만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인연금법은 수급권자가 복무 당시 기여한 금전 및 그 납부기간에 비례하는 퇴역연금 등의 금전을 퇴역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산입은 법 개정 당시 복무 중인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산입을 소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등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볼 때 제정안은 소급입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저해 가능성, 타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과다한 재정소요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동 제정안의 내용은 16대 국회 이후 총 여덟 차례 제안되었고 모두 임기 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검토의견에 국방부도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주 위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이 단체가 호국보훈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국방위원님들은 다 만나 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분도 말씀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36페이지,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시 외국에 대한 무기 대여·양도 기준과 국가별 대여·양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아래와 같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국제적인 외교·안보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무기 대여·양도 기준에 대한 정부·국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사후적 통제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군사외교에 관한 업무

재량의 침범 범위가 크지 않아 보이고 사전적 통제로 대여·양도 자연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 외교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군수품의 유상 대여·양도 사업 수입이 총액으로 표시되어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사업수입을 별도 파악할 필요성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무기의 무상 대여·양도 현황을 별도 보고받을 필요성 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질의·현안질의 및 자료요구, 서면질의 등 국회의 정부 정책에 대한 통제장치 활용 시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달성 가능할 수 있고, 현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 유·무상으로 대여·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 대여·양도에 대한 조건·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의 대여·양도 기준을 확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 가능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군수품의 대여·양도에 관한 권한을 국방관서 등에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군사 외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군수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신중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국방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김병주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하고, 하지만 그 관련된 대여·양도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현행법과 규정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영향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나름대로의 통제장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이것을 법률로 상정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대여·양도에 관한 조건이나 기준이 현재 명시돼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령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마련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우선 이 법을 발의해 주신 김병주 위원님,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을 수정하면 국방부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법 발의한 것에서?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현재 군수품관리법하고 시행령 그다음에 관련된 훈령 등이 지금 여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절차,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 발의보다는 그 안에서 기준이나 절차들이 혹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내용에서 시행령을 고치든지 훈령을 고치든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이것은 사후 통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방부나 이런 것 운용을 할 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되면 국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국방부라든가 관련자들이 나중에 보호를 받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50여만 발로 추정되는, 미국에 수출을 해서 이렇게 했든 대여를 했든 이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재조사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때 관여했던 사람이 다 다치게 되는 거지요, 솔직히.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있으면 연말이나 이럴 때 주기적으로 이런 것을 보고하고 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안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 보고되고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정권이 바뀐다든가 어떤 상황이 되면 완전히 거기에 성실히 일했던 사람이 고소·고발되고 또 잣대가 바뀌어서 다른 잣대로 들이대니까 감옥에 가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는 외국에 대한 무기 대여라든가 양도 이런 거기 때문에, 군수품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대여·양도하는 경우는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 대여·양도 잘못하면 매국노로 찍힐 수가 있어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산업체가 수출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지금쯤 돼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 항목에서 이러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조정할 용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으니까 국방부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군수품관리법에 이것도 사실은 되게 허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의 종사자들이 대여·양도하더라도 보호를 받게 되는 거지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이슈가 돼서 50여만 발 미국의 수출인지 대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따지면서 보니까 허점이 있고 그때 관여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내가 진짜 의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성실히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각도로 고소·고발되고 또 법의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법에 허점이 있구나 해서 보완한 겁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정부 의견에서 군수품 대여·양도에 대한 권한을 국방관서에 부여하는 것이 군사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라는 취지 맞아요?

군수관리관님, 우리가 지금 군수품관리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 이갑수입니다.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함부로 처리하지 말고 엄격하게 재산을 관리하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박선원 위원 특히 유사시 대비해서 언제든지 적의 도발이나 다시 교전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군수품을 가장 신속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물량 만큼 그 전투 소요에 맞게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군수품관리법이지, 외교의 재량을 발휘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정부 의견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군수품을 관리할 때 있어서 각각 최저 5% 그다음에 과다 5% 이내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작게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전시에 Pre-ITO를 포함해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빈틈없이 갖추라는 게 군수품관리법의 목적이지 무슨 재량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예요?

차관님,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취지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이 거기다가 저희들 의견 기재해 놓으신 것은 군사외교상에 무상으로 대여·양도해 주는 그런 무기 체계를 선정하고 하는 절차에 있었을 때는 외교 관례상 이것들을 공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요구하는 국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군사외교상에 필요할 때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같이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의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 폐기해서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러한 군수품에 대해서 무상 양도 형식으로 군사외교에 활용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시 대비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군수품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군사외교의 효율성을 위한 재량 발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앞에.....

○**박선원 위원** 미국하고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항상 미국의 증파와 증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대여도 하고 협력도 하는 것은 유일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동맹국과의 관계가 제3국의 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실상의 우회 지원이고 그 우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군수품관리법상 위배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막아야 되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십만 발이다 그러면 우리 비축 물량의 몇 %였어요, 그 순간에? 이갑수 관리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50만 발이다 그러면 5% 범위 훨씬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종섭 장관님하고 신원식 장관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반했다는 이야기지요. 합법적으로 했으면 왜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그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이라도 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사후적 통제라도?

그리고 비공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불편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국방부가 군수관리에서의 불편함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그 개정안에 제시되어 있는 것의 표현은 대여·양도 기준 이것과 전년도에 국가별 무기 대여·양도 실적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무기 대여·양도와 관련된 군수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다양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법률적 규정을 가진 것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준에 갖고 계신 것에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

다.

- 박선원 위원** 차관님, 방금도 거부한다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한다 해도?
- 한기호 위원** 아니, 박 위원님, 혼자서만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들은 로봇이에요?
- 박선원 위원** 말씀하세요.
- 한기호 위원** 말씀하라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 박선원 위원** 아니, 위원님……
- 한기호 위원** 다른 사람한테 발언할 기회를, 말할 기회를 줘야지 혼자서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승찬 위원장님이 말을 안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 소위원장 부승찬** 자, 정숙해 주십시오.
- 한기호 위원** 혼자 계세요, 지금 여기?
- 박선원 위원** 부승찬 위원장님이 말을 안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 소위원장 부승찬** 정숙해 주세요.
- 한기호 위원** 어느 정도 하면 절제를 좀 하세요.
- 박선원 위원**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아니, 위원장이 사회권으로 해서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실 차례다 하면 제가 당연히 말 안 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 한기호 위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지요.
- 소위원장 부승찬** 정숙해 주시고요.
- 박선원 위원** 아니, 말씀하시지 그려셨어요, 위원장한테. 왜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 소위원장 부승찬**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 한기호 위원** 혼자서 지금 15분간 얘기했어요, 제가 시간을 봤는데. 지금 그게 말이 돼요?
- 박선원 위원** 15분간, 아닌데요?
-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한기호 위원님……
- 박선원 위원** 아니, 심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 소위원장 부승찬** 정숙해 주십시오.
- 박선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위원** 정리됐어요.
-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어차피 여기서는 시간 제한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질의했으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질의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안 맞아요.
- 박선원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다 동의하고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우선 지금까지 현 제도에서 시행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22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서 처음으로 문제 삼는 겁니다. 문제 삼는 자체가 불손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과잉 업무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한다 그러면 아예 우리 국방 위원회를 국방부에도 설치하지요.

그다음에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받는 것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지요. 받는 것은 왜 국회 동의 안 얻습니까? 옛날에 미국의 잉여 무기들 전부 우리가 받았어요. 그때 국회 동의 얻었습니까?

행정부를 일반적인 견제가 아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잉해서 간섭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의 범위를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느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못 받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보고할 것은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예 상임위에다 항상 보고하라 이렇게 하는 자체가 과잉 간섭이라는 거예요. 국회도 국회에서 해야 될 범주가 있는 거지 무조건 다 하겠다…… 만능입니까, 국회가? 국회는 무소불위입니까? 하느님한테 권위를 받았어요?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지금 군수품관리법이나 현행 군수품관리훈령에 의해서 대여 및 양도하는 부분들이 사실 말 없이 지금까지 되어 왔잖아요, 방금 한기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소리는 무슨 소린가 하면 상당히 투명하게 법과 제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절차가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을 국방부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작성하는 데 내용들을 보면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트(End User Certificate)’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작성해 가지고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가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절차가 투명하게 잘 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임종득 위원** 아니,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유용원 위원** 설명 듣고……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아까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임종득 위원** 아니, 절차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군수품이 국외로 대여될 때는, 대여되는 것하고 양도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대여될 때는 요청하는 대여 기관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장비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각 군 본부가 그걸 검토해서 저희 국방부에 가용 여부를 보고하게 되고 저희들은 그것들을 해당 인접 부서, 방사청이면 방사청, 외교부 등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종합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심의 의결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요청한 국에 해 주고요.

양도를 해 줄 경우에는, 양도 요청을 처음에 받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국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실제로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도태 장비 위주로서 전투에, 우리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가능성 여부를 보내 주게 되면 그것을 요청하는 국가가 직접 와서 장비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인수해 가겠다고 최종 확인을 하면 절차에 의해서 양도를 해 주는 이런 식의 절차가 되어 있고, 그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과 시행령, 훈령에 그것들이 명확히 명기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준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곁들여서 결론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이런 것을 명기했을 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대여를 받는 대상, 이것이 특히 외국이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위축이라든지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련 내용을 저희가 국회의원들한테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것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것을 요청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절차와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한다는 의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로 퇴역 무기, 함정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양도 또는 대여한 국가들 중에 공개를 원치 않아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어느 나라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몇 개 나라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최근에 인지한 것은 2개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과거 사례하고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함정들이 그동안 중남미 쪽에 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우리 K-방산 수출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방산도 있고 그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외교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 의혹 등을 주 배경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게 없으시다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거기 세 분 말씀하셨고 나 혼자 이야기하니까 좀 길게 해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끊을 것 있으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앤드 유저 서티피케이트(End User Certificate)를 미국이 발행합니까, 정말 앤드

유저가 발행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최종사용자 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확인하고 명기하게 되어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갔다 하면 엔드 유저는 우크라이나로 표시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회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우회 지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사용자 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나라의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어쨌든 확인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국회법이나 증언·감정법상의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것이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방금 유용원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함정이라든지 그런 도태 장비에 대해서 무상이든 최소한의 유상이든 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문제 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군사외교라든지 K-방산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의 사후 실적 보고조차도 행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 나라 이름을 가지고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것들이 군수품관리법에 법률로 규정돼서 정부가 국회에 그것을 상시보고해야 된다는 법률이 제정되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국방부 간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진행됐던 건데 이제 그 사실들이 다 국회에 보고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법률에 있다면 혹시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도 현재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법률에 넣어서 포괄적인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를 자아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특사단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것 에이태.cms(ATACMS) 50개 빌려 달라 하면 빌려줄 수 있어요,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는는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것은 저희 전투 임무에 직접적 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차관님,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군수품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국방 역량, 즉 응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전투에 신속하게 조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표다 이거지요. 그것을 재확인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군수품관리법에도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대여·양도가 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바로 그 점이지요. 그것을 충실히 지키시라는 것과 함께 계속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군수품은 국유재산이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국유재산이면 국회 통제를 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결산안에 이것을 보고를 안 하면서 심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요. 그냥 법 절차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관리관님, 뭘 제대로 보고해요? 개인 위원한테 뭘 보고해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가 미진한 부분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며칠 지났어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는 좀 제한되는데 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보면요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산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회피하니까 법을 통해서라도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 의도예요, 제가 당했는데? 아니, 계속 국회법이나 증감법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시면 이런 법들이 안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저도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뭣 때문에 안 돼, 뭣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예산소위 할 때도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주시고 그래서 예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설득이 되고 협의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겠습니까. 그런 입장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44페이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법상 정의 규정에서 침투 및 도발의 통합방위 대상 영역에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군 대상 사이버 침해 시도 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공격에 의한 국방정보 유출이나 파괴 등의 예방을 위한 대비태세 강화가 요구되고,

사이버전력을 보유한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안보환경 고려, 그리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을 지상, 해상, 공중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투·도발 시 관할구역이 불분명하나 사이버 공간을 침투 도발 대상 영역으로 규정할 경우 관할구역이 명확해지는 효과 등을 볼 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역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사이버 공간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반영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도발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의 시설 마비, 정보 위조 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가 기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제56차·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공격, 테러 등에 대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경찰청 모두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 지금 통합방위법은 사실 군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있는 군 외의 제작전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의 권한과 범위를 설정해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신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역은, 현재 우리의 수행체계는 군이 주도되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 주도되는 수행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방위법에 들어가면 현재 국가 사이버 수행체계하고 충돌됩니다. 통합방위법에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저희 군이 사이버 공간에서 있는 제작전요소의 침투라든지 도발에 대한 대응을 주도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수행체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의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김선교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침해 시도가 1만 건 얘기했는데 지금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2차장 할 때도 사실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여야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정부입법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통합방위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좀 커버해 보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가장 아이디얼(ideal)한 부분은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은 관쪽에, 그러니까 관쪽의 영역은 국정원, 민간 영역은 과기정통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안보실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 차원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방위법 쪽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누가 설명하지 않은 걸로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조문만 일단 보면 ‘침투 대상 영역에 정보통신기반시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하드웨어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발이라는 것을 보면 위의 침투라고 한 9항에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고 해 놓고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정보통신기반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도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의원님께서 낸 개정안을 저희가 조금 해석해 보면, 거기 정확한 표현에 보면 ‘영역 또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영역이라는 개념의 공간을 사이버 공간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정보통신시설의 체계까지도 같이 함의한, 도발과 침투로 이렇게 다 함의하고 계시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기관 할 때 국정원에서도 사실은 정보통신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돼야지, 제가 봐서 이 사이버 분야가 앞으로 전장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정보통신기반시설이면 여기에 관련된 사이버 분야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아니, 정보통신시설이 국가 중요한 시설로 보호를 받잖아요, 시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지금 안의 사이버 침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 두 가지를 다 함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시설과 공간을……

○**한기호 위원** 이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포함됐다고 안 느낀다고. 분명하게 나눠서 하든가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지, ‘사이버공간’ 이렇게 얘기하든가.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아까 임종득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에 대해서 성안 중에 있고 그것이 통합방위법하고 일부 중첩이 되겠지만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 모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훨씬 더 정교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보위 법과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간과 그다음에 시설 이것에 대한 용어 정리, 구분을 명확히 했을 때 통합방위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3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50페이지,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의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직무수행 과정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 감경·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의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유사한 경찰·소방은 이미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군인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군사경찰 및 경찰·소방의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기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 이후 적절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개정안 및 부칙에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감경·면제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고 손실보상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저희 측 수정의견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수정의견은 52쪽 우측 하단 쪽에 있습니다.

개정안 제50조의2제3항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성 및 부대 차원의 신속한 사실조사 등을 고려했을 때 각 군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세한 사항을 개정안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그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속을 삭제한 수정의견은 52쪽 바로 하단, 우측 아래쪽에 있습니다.

또 부칙 시행일과 관련되어서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있어서 생명·신체상의 손실 기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상 규정은 개정안과 중복되며 다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징수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는 동법을 감안하여 타 법 개정을 통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드린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형사책임 감면 규정 등 관련 내용이 있지만 수정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손실보상위원회 구성을 지금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제,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문제를 1년으로 설정하는 문제, 마지막에 군사경찰 직무법상에 손실보상 규정이 부칙으로 있는 것을 삭제하는 문제 등 이 세 가지 수정의견을 수석전문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직무를 수행했고 고의도 없고 중과실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 어떤 형법상의 감경·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법무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법무관리관 홍창식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형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다만 타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명시를 할 경우에 우리 장병들이 좀 더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선원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장병들의 임무 수행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다른 직역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이미 있고?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경찰·소방공무원 있고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뜻이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님, 다음……

○**한기호 위원** 아니, 차관님, 지금 훈련 중에 대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 훈련 대민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절차대로 심의를 하고 보상하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문제……

○**한기호 위원** 아니, 재산 피해를 입혔으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법무관리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도 이 법률에 따라서 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기호 위원** 법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기계화부대에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전차나 장갑차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가다가 윤형 철조망이나 이런 철조망이 있으면 궤도에 딱

걸리면 그것을 꽉 걷어 가지고 다 가 버려요. 그래서 한 집의 울타리를 완전히 통째로 걷어내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보상하는 문제가 있을 때 처벌하는 문제가 따라요. 그러면 조종사나 전차장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어차피 그 주인한테 보상은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전차장하고 조종수가 개인사비를 털어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훈련 간에도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책임 안 묻는다 이거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흥창식** 앞부분의 형사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라든지 있는 부분은 형사적으로 판단을 다시 할 것이고 그야말로 단순한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 또는 감경하겠다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예.**

○**소위원장 부승찬**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58페이지,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군사 목적이나 재난 대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부대 동원을 제한하며 부대가 재난 현장에 투입될 때는 사전에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관이 동원 범위를 벗어난 명령을 하거나 안전관리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지시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동원 명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리한 재난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무리한 부대 동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지휘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국방·군사 목적 및 재난지원에 의한 동원은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할 수 있으며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안전관리 점검 절차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개정안의 처벌 규정에 대한 요건에서 대민지원, 대규모 행사 동원 등이 국방·군사적 목적의 동원에 해당하는지 또한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또는 지원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안의 처벌규정에 있어 산업현장과 군부대가 동원되는 재난현장 여건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은 신중한 검토 의견이고요, 법무부도 비슷한 신중한 검토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동원하는 문제는 지금 행정절차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지자체 장이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군부대에 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군부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그런 것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중대 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휘관의 군부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주와 종사자의 관계에 적용되는 이런 법을 적용하는, 군부대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의해 주셨던 근본적인 취지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그런 데 투입될 수 있는 장병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의 관련된 규정·절차 등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잘 보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지금 작동하고 있는 국가재난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 속에서 관련 부처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조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되었을 때 과연, 군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빠른 시간에 대응을 했을 때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긋난 명령' 이 부분을, 상관이 어긋난 명령을 하는 부분을 부하들이, 병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안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휘체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앞에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하면서 하나, 2년 전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에서 9명이 사망하는 이런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해병대에서 수륙양용 장갑차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인명 구조를 해서 박수를 받은 적이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마 거기서 많은 절차와 이런 것을 지휘관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즉각적인 초동 조치에 약간의 제한과 한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님.

○ 박선원 위원 뭔가 딱 부러지는 어떤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는 민간 재난지원을 하지 말라 하면 사실은 고맙지요. 군 임무에만 충실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재난에 공동 대비해야 되는 긴급성 때문에 군부대 동원을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든, 그러니까 우리 군이 보호가 되면서 또 역량은 역량대로 하라는 매우 애매하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시행령이 됐든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에서 우리 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군인의 보호도 동시에 중시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좋은 방안을 군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제일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은 64페이지,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실은 강선영 의원님께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어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안 해도……

○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72페이지,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정법으로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군 방첩, 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군인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7조에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감금,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을 금지하고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의 죄를 범한 경

우 각각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국군방첩사령부령을 법률로서 상향 입법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중장이 사령관으로 보임되는 기능사령부급 부대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비하여 정치관여, 직권남용,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을 금지하는 조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 국군방첩사령부를 포함한 모든 사령부급 부대가 대통령령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점 그리고 군 방첩·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정에 따라 직무 활동이 위축되거나 기능 수행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은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대상과 범위가 축소·제한되고 전시 등 안보상황에 맞추어 군통수권자의 유연한 국군조직 운영이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정원은 제정안에 대해 방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는 방첩 업무의 범위가 실제보다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필요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총괄적으로 각 조문보다는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법률 제정에 대해서 법체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것이 법률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국군조직은 법률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군조직법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현재 국방부장관에 귀속되는 기관들이, 한 20여 개의 부대들이 국군조직법에 근거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부대령으로 만들어지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의 정합성 차원에서 봤을 때 방첩사만 법률로 제정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20여 개 부대들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체계 정당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의견이고.

세부 항목에 가면 좀 이따 다시 논해질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방첩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행 업무에 있어서 직무 범위가 많이 축소돼 있고 제한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먼저 이 법률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 세부 내용은 현재 방첩사가

수행하는 부대령에 명시돼 있는 직무 범위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제안하신 분이 먼저 말씀하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수사와 관련돼서 법으로 규제 안 받는 조직이 있나요? 조사·수사와 관련돼서 경찰, 군사경찰, 국정원, 검찰……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하시는데 국군조직법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령부 설치와 관련된 근거예요, 사령부 설치와 관련된 근거. 국군조직법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국방부 예하에 그 조직을 둔다, 그것은 설치와 관련된 거고 수사·조사 이것과 관련된 조직 중에 법에 근거하지 않는 데가, 영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나요? 한 곳이라도 대보십시오.

법무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수사와 관련해서 방첩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수사관 내지 영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44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다음에 이것 외에 있어요? 보면 이 이유를 드는 것이 첫 번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법률로 설치할 경우 전시 등 안보상황 변화에 맞추어 군통수권자 또는 장관의 결정이 수행되어야 할 부대의 설치 및 직무조정이 제한될 우려, 이것 완전히 근시대적 발상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이유를 맙니까?

전시가 되면요 전시계엄이 발동돼요. 계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 사령부가 수행하는 직무 범위를 누락·축소해 군 보안, 방첩 기능 약화 불가피, 뭐가 약화가 돼요? 누락한 게 뭐 있어요? 개인 비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군인의 개인 비리?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비리 정보 이것을 왜 방첩에서 합니까? 카운터 인텔리전스(counter intelligence)가 사람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를 수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에 나와 있나?

그동안은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권력기관이 운영이 됐어요. 이것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은 안 했던 거예요. 모든 개인·조직·집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집단이에요, 기관이에요, 방첩사령부가. 북한의 총정치국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제한될 것 같지요? 오히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사·조사·보안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거일 거예요, 아마.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비리 정보’ 이게 국방부가 축소·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예정자, 경찰에서 하면 되지요. 군무원 임용예정자, 군사경찰에서 하면 되지요.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리스트업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 완전 구닥다리예요, 완전히 권위주의적 발상이에요. 방첩 업무에 집중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법으로 끌어올려서 수사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이 법으로서 그것을 보장한다라는 법의 어떤 정형성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해소가 돼서 인정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용상에서 보면 군인·군무원,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및 신상 사항 수집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부승찬** 비리와 불법 정보에 대한 거고요, 이것은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군사법원법 제44조에 근거해서 이 조항을 갖다 붙이면 돼요, 할 수 있게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부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려 면에서 충돌되는 것, 거부권을 인정하는 문제, 겸직을 금지하는 문제, 손실보상하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런 처벌규정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그것들이 정치 참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이런 것들은 다른 법체계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로서 이것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 세부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 상태에서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대의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시적인 것은 수정할 수 있지요. 하지만 유일한 기관이라니까요. 법적 근거 없이 사람에 대한 수사·조사하는, 영에 의해서 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없어요. 하다못해 국정원도 국정원법에 따라요. 군사경찰도 군사경찰법이 있어요. 아니, 군사법원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러면 이 권력기관들은 그냥, 이 입법취지를 잘 파악하세요. 지금은요 입법취지를 괜히 축소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방첩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군사경찰과 그 영역을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왜 이걸 방첩사에서 합니까, 군사경찰도 있고 군검찰도 있고 체계가 있는데? 방첩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시적인 것은 세부 조문 검토,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조문을 여기에다 넣어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들 말씀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군사경찰법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군사경찰법을 만들 때 군인이 아닌 민간인 영역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보장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경찰법을 만들 때 군사경찰의, 각 국방부에는 무엇을 둬야 된다, 각 군 본부에는 무엇을 둬야 된다 하는 조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부대령이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사경찰에서 가장 핵심을 뒀던 부분은 민간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법률로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데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법안은 우선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감찰실장 1명, 조직을 언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첩사령부에 소속된 군인들은 정당이나 정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다, 이것은 군인복무기본법에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저하고 안규백 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중복돼서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거에 보안사가 있었지요. 보안사가 있다가 지난번, 먼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기무사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안지사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방첩사로 바꿨습니다.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것을 법으로 상향 조정했나?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령으로 했고 훈령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것은 다음 정권이 와서 바꿔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국군조직법인데, 여기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정보사 업무 같은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777부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대들에 대해서…… 또 특전사도 지금 707특임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으로 실제로 경찰에서 요청해서, 경찰에 의해서 협의가 된 것을 하는 거지 그냥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단 다음에 이게 무슨 법이냐? 제정법이냐 개정법이냐 했을 때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은 법을 제정할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정법의 절차를 거쳐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 인사 검증에 대해서 군사경찰이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군사경찰이 가지고 있는 비익성과 안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장군들 심사를 한다? 물론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장군들 자력에 의해서 심사하기 위한 자기 이결 다내지요. 조항을 만들어서 다 체크해서 내는데 그걸 군사경찰에 내면 그대로 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익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신원 조회는 지금 국정원이 하듯이 우리도 방첩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과 관련된 것은 법적 보장이 되는 부분 있습니다. 인정하지만 이 전체를 조직까지 다 포함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손을 두드림)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지금 제안하신 위원장님의 설명도 들어 봤고 한기호 위원님 이야기, 정부 측 이야기를 죽 들어 보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의 공감이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논의돼야 될,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나뉘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이 정도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첫 번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좀 좁힐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요.

아까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군의 부대 조직은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법령으로 정해지고 나머지는 부대령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한기호 위원님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제정법에 대한 절차들을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

는 부분이 있는데, 국방부 측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몇 가지 점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니고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지난 몇 년간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게 몇 건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특전사 대위가 북한 해커의 군사기밀을 누설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48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정보사 군무원 사건도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1 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요. 지난 5월에도 현역 대위가 금전 대출 목적으로 암구호를 유출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도박이나 금전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방첩 활동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기무사, 방첩사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군인, 군무원에 대한 신원 조사 이 부분도 나머지 3 만 명에 달하는 방산업체의 직원들, 그다음에 외국인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군부대의 출입 종사자가 한 1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신원 조사 문제 또 아까 한기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헌병, 군사경찰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엽적인 건데,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방첩사 역할 말씀하시면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뀐 게 DJ 정부 때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1990년에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 그때 기무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바뀐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부승찬 위원장이 중요한 법률안 제정을 제시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수사, 인신구속과 관련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다라고 하는 점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 관여는 물론 국군조직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제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의 흑역사가 어떻게 했고 어느 정도로 정치에 깊이 관여했는지. 2012년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선거에, 2016년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대통령선거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실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권한의 오남용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또 지난 6월 하순에 국가안보수사국과 함께, 국수본과 함께 MOU를 체결했을 때 나타난 점, 그 속에서 민간인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기무사가 됐든 안지사가 됐든 방첩사가 됐든 거기의 능력 있는 수사관이나 전문 인력들이 임무 수행의 결과로서 피해나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또 여전히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법률 제정안이 제출된바 그 제정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춰 나가면서 이 법에 대한, 넓게 이야기하면 국민적 토론이 되겠지만 좁혀 이야기하면 우리 군 관련, 안보 관련 커뮤니티 안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 줌으로써 국군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길을 또는 근거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요. 오히려 방첩 업무를 명확히 한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셨는데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것들은 하게끔 돼 있어요. 법조문에 넣었고요. 그건 오해신 것 같고. 오히려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방첩사령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라고 해 갖고 가·나·다 있는데, 저희는 가·나를 더 추가했어요. 국군조직법 '나' 같은 경우에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군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포함했어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의…… 국방부가 축소·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이게 방첩과 관련 있으면 방첩사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금전 사고야, 그걸 왜 방첩사에서 합니까?

방첩과 관련된 것, 카운터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것은 방첩사가 하면 돼요. 그리고 군사경찰에서 하다가 넘기면 돼요, 방첩사로. 법으로 만들기 쉽은 거예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법의 통제를 받기 쉽은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어디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수사를 합니까? 영에 따라서…… 그동안 안 했던 거고요, 못 했던 거고……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박선원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위원장의 제정안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각 조문별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양쪽 안을 대조해 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처리하면 된다, 굳이 국방부가 할 생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미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 법률체계에 대한 문제까지 다 제기됐고 어느 부분은 수정됐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은 동의하면 좋겠다,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리고 참고로 국정원도 방첩의 개념, 용어 정의부터 범위 이것을 명확히 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달아 놨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부승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군조직법의 목적 규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역사성과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국군은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 오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헌법에 직접 근거한 기존 법률들의 목적 규정 예시, 개정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조직을 설치하는 조직법의 목적 조항은 헌법이 조직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공통적이고 단순한 법기술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및 지위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개정안은 통상의 법 형식에 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에 대한 문구보다도 이게 법기술 형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관된 법기술 형식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국군조직법 조항에 넣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차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 조항은 헌법이 조직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순 법기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군 광복군의 부분들을 추가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놓고 봤을 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넣는 것은 좀 이상하다, 다른 법 기술한 것에 비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이 지금 작년 올해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이슈를 집어넣은 게 아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국가정보원법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직의 목적과 목표…… 그러니까 굳이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법 개정할 때 이태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당시 야당 의원님들이, 신원식 의원을 포함해서 다 요청을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법이 훨씬 더 단단하고 정통성도 강력하게 부여되고 또 국군이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조직법과 거의 동일 반복이지요. 조금 더 높은 가치나 지향성이거나 우리 대한민국 군이 어떤 조직인지, 국군 조직이라는 그 뿐만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아요. 대립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군은 한국광복군과 독립군을 계승하는 군대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것은 계승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광복군 독립군.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여기의 정부조직…… 정부,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군하고 정부의 차이가 뭐예요, 국군이 정부에 종속됩니까? 법원하고 국군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감사원하고 국군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역사성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동의하신다면서요, 계승하는 것을.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이 법안 접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동의 안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동의 안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기호 위원** 제가……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먼저 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독립군은 누구고 한국광복군은 누굽니까? 두 개의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제국 군대가 1907년에 해산되면서, 그렇지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그다음 나타난 게 뭡니까?

○**한기호 위원** 얘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의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군의 정통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에. 그래서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을 여기다 넣겠다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헌법 전문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말을 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시정부가 뭡니까, 그러면?

○**한기호 위원** 그리고 여기서 독립군과 광복군이라는 것은, 특히 한국광복군 이러는데 한국광복군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국광복군 있습니다. 내기하실 겁니까?

○**한기호 위원** 찾아보십시오.

○**소위원장 부승찬**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법조문에 넣으면서 한국광복군의 개념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넣었겠습니까? 그것은……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정통성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조직의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시정부……

○**한기호 위원** 아니, 국군 조직의 목적은 조직을 왜 만드느냐는 건데, 여기 조직을 만드는 이유에다 이것을 뭐 하려 넣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왜 넣으면 안 됩니까?

○**한기호 위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지.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국정원법에 왜 넣었습니까? 왜 동의를 하셨습니까?

○**한기호 위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지,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이것을 뭐 하러 넣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왜 못 넣습니까?

○**한기호 위원** 헌법에 있으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소위원장 부승찬** 왜 못 넣습니까?

○**한기호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역사성과 정통성을 보자는 건데 왜 못 넣습니까?

○**한기호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리고 한국광복군이 없다라는 말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

○**한기호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 그리고 있으면 저한테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같이 입법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법 논의하면서 사과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없는 걸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선원 위원**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용원 위원** 위원장님, 저……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복군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실체는 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전통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신라 화랑정신, 고려 상무정신, 구한말 항일 의병 정신……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지금 저하고…… 지금 뭇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더 올라갈까요? 고조선, 박혁거세로 가요?

○**유용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왜 또 소모적인 그런 논란을 초래 할…… 그런 생각이 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이게 왜 논란을 초래하는 일입니까?

○**박선원 위원**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지금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화랑까지 갑니까? 고조선까지 가세요. 아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유용원 위원** 아니, 헌법에 광복군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님은 어쨌든 특정 정당 소속이지만 객관적으로 회의들을 잘 진행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높이고……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신라까지 가요? 헌법에 기초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용원 위원** 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부승찬** 시비지요, 그게.

○**유용원 위원** 내 생각을 얘기한 거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상대방이 봤을 때는 시비지요.

○**유용원 위원** 아니,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헌법에 기초한다 그랬잖아요. 헌법에 기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용원 위원** 아니, 그러면 헌법 전문에 독립군 광복군 다 돼 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나 진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논쟁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지.

○**유용원 위원** 위원장과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고조선까지 가시라고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발의한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의견의 어떤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래도 논쟁을 하시려면, 의견을 하시려면 그건 아니지요.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 없이 갑니까, 이것? 그러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잖아요.

○**유용원 위원**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그러시는 게 싸우자는 얘기로 들리지요, 저한테는.

○**소위원장 부승찬** 마찬가지예요.

○**임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부승찬** 그만하시지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안 줘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제 의결하지요.

○**임종득 위원** 기회 안 줘요?

○**소위원장 부승찬** 하십시오.

더 논쟁만 될 것 아닙니까?

○**박선원 위원** 법안은 이야기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참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계속 심의하시지요.

○**박선원 위원** 계속 심의합시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송재봉·염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정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분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연차별 소음대책사업 계획 및 연차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 공항의 소음피해에 적용되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피해 주민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연평균 1조 331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군용비행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장기적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용비행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군사격장의 경우에도 군사격장 통합·권역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이전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입니다.

현재는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지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현행 기준인 소음영향도 외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형지물의 경계 등도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경계지 설정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법률 적용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상황 변경 시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계지 설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경계지 설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규정하고 소음대책지역 변경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송재봉 의원님안입니다.

현재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주기의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주민대표 등에게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경우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음대책지역 변경 요청권을 신설하는 것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음영향도의 중대한 변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의 주민대표의 경우 주변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 등의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요청 이후 후속조치 등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고 보상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 책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고 또한 보상금 지급받는 기준은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액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 대상에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급 규모와 관련해서 소음대책지역 내 근로자들의 소음피해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감액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상금 감액 기준 배경이 1988년 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사건, 2010년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사건 등 소음피해 문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입 시기별 감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소음피해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상금 책정과 관련하여서는 협행 법률에서 보상금 등의 책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등 다수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등의 경우인 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여러 보상 관련 법률 등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법률은 2019년 11월에 제정되어 2021년 12월에 최초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2022년에 소음피해 보상금이 최초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법률의 효과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각 조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과 적용의 한계 등에 관련해서 국방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재원이 약 1조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 또 이것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실효적이고 즉시적인 조치들을 침해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기존의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방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는 비용이 많다 이런 뜻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비용적 소요도 있고 실효적으로 소음법을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령에 있으면 실제에 맞게 융통성이 있는데 법률로 있어서 그것이 또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

이게 실제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시설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런 것들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관련 법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의 연계성 문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재판 결과를 좀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근무시간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 안에, 시설 안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박선원 위원** 그 피해 정도의 심각성은 이미 법이 있다시피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지요. 소음법은 22년부터 관련돼서 적용을 하고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원 위원** 기재부도 한 말씀 혹시 가능하시면 해 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게 법이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은 법 체계상 지원이 다릅니다. 군공항 소음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체계이고 그다음에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되 소음 대책 복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체계가 다릅니다.

20대 국회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부승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에 대한 연구는 해보셨나요?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있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법례를 저희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되는 부분에는 물가 적용례가 있었는데 다른 보상에 관해서는 적용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보상하고는 좀, 이게 소음과 관련된 것 특허나 군용기지 소음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여쭤본 거였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우리 지역이 지금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는 제일 소음이 많은 지역일 겁니다, 헬기장부터 사격장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까지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될 때 시행하고 한 5년 정도를 하면서 모든 걸 다시 종합평가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5년이 언제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27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조사를 20년에서 21년 말에 지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소음평가를 하고요. 26년도 말 정도에 다시, 5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2차 개정이 아마 26년일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5년 주기라고 그래서 사실 저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는 건데, 지금 소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기준이 이 집은 되고 이쪽 집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말이 많고 또 소음에 대한 보상액이 너무나 적다고 또 말씀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은 너무 돈이 적으니까 개별적으로 집에 다 주지 말고 그 지역 사업으로, 사업으로 돌리자 이렇게까지 하고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 내년도에 이걸 정확하게 많은 걸 다 수렴해서 담아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을 도매물가상승률이든 뭐 물가상승률 계산을 해 줘야 돼요. 5년이면 그동안에 많이 변화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할 때는 구체적으로 좀 따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까지 2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 모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으로서 다섯 가지 개정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은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고도제한 해제 조건으로 군공항 이전 건의 지역 중 실제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공항 이전 건의만으로 이전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비행안전구역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모양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부분만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 비교표와 고도제한 개념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개의 개정안 모두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고도제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한 것이며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항공기 등이 안전한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민간공항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등의 비행 안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우선 확인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행안전구역 각 구역 간 경계 부분의 표면높이의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구역이 접하는 부분의 경사면의 기울기를 7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7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경사면을 1분의 1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대로 하면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경우 제4구역의 고도제한은 제5구역과 접하는

곳까지 일대일의 비율로 300m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됨에 따라 4구역 안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 현행 규정보다는 건축물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가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4구역은 항공기가 착륙을 위한 진입에 실패했을 때 탈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국제기준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차폐이론 적용 가능 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폐이론은 27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비행 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현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서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훈령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반영 시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차폐면보다 낮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폭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행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 간 면밀한 비교형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중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동 위원회에 지역 주민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이해당사자 지역 주민 2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지역 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심의에서 이해관계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관할부대장이 지역 주민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 취지가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문 개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개정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방부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국제기준, 이 국제기

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전부 국제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국제기준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 이거야.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제민간항공기구 이거하고 하나는 FAA 미 연방항공청인데 그러면 미 연방항공청에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요.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이게 국제기준을 바꾸지 않고서 우리만 이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국제기준을 어떻게 하면 바꾸나 이거지. 이게 우리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국제기준을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국제항공기구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야지. 내는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한국 지형이 산악이 많기 때문에 국제기준 여기에 완전히 일치하긴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만 이거 해 달라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인 특징이, 다양한 자연 지형이 있고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비행안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CAO나 FAA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행안전평가를 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지금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지형에 맞게끔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제도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는 거는 ICAO나 FAA나 어디에도 있지는 않지만 저희만 예외적으로 조금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형을 고려한 거는 지금 저희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사실 늘 안보와 국민 생활과 상충됐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제시되잖아요. 그런데 항공기라고 그랬을 때 대형 민간 항공기하고 예를 들어서 성남비행장이나 수원공군비행장을 예를 들어 보면 상대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뜯 수는 있지만 그 크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회하는 데 민첩성이란다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ICAO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용 항공기 기준으로 해서 현행 규정과 개정안 사이에 가급적이면 중간의 위치라든지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는 없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ICAO 규정은 민항을 다루기 때문에 민항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FAA는 미군에서 쓰는 전투기에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FAA 규정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민간하고 군용의 차이는 민간이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규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 민간 쪽이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비행장이 저희 수송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전투기도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27쪽의 그림을 보세요. 27쪽의 그림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못 하느냐는 거지. 왜냐하면 5구역을 수평으로 잡은 게

아니라 경사지게 잡았다는 거지. 이건 일리가 있다니까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장애물이 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한국 법에는 일괄적으로 45m를 추가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도 없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연구를 통해서 안전에 위해가 없다라는 걸 확인됐을 때만 재량으로 해 주는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 45m를 일괄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원님 발의 법안은 여기에다가 90m까지 더 확장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45m까지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90m까지 주자는 이유 자체가, 뒤에 최고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90m로 가도 결국 뒤쪽에 있는 최고장애물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락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왜 45m는 되고 90m는 안 되냐는 거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45m도 개정됐을 당시에 공군은 너무나 안전에…… 그렇지만 국민의 생활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군보다는 조금 더 허용하는 규정으로 갔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산이 있기 때문에 90m 또는 100m까지도 줄 수 있는 게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하면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증을 하고 하자라는 게 공군 측의 의견인 거고요. 의원님처럼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거는 부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질문 좀 드릴게요.

ICAO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ICAO 법을 준용하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그러니까 ICAO 규정을 미군의 공군이 받아서 FAA 규정을 만들고요. 저희는 그 FAA와 유사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ICAO 규정, FAA 규정하고 다르다고 해서 국내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간섭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제 얘기는 ICAO 같은 경우에, 국제민간항공기구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 항공법, ICAO가 규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고도라든지 ICAO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가 다 ICAO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7구역까지 있다고 치면 고도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ICAO는 장주를 타원형으로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은 아예 비행을 못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출입 이것만 ICAO 기준이나 FAA 기준을 준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풀어 준다는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간사이공항이나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항들은 군용도 마찬가지로 훈련 자체를 공항 주변에서 안 하니까 훈련 구역, 공역 가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착륙할 때만의 문제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ICAO에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ICAO가 전 세계 공항이 모두 다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 걸로 봐지고요. 일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한국은 미군하고 공항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아무래도 FAA 규정에 준하는 한국군 공항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희망은 하는데…… 그러면 회의는 얼마나 해 보셨어요, 미군하고? 미군들하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고도제한 이게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미군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협의는 해 보셨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이거는 일단 미군의 협의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이 기준보다 더 완화되는 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대한민국 공군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부승찬** 롯데타워도 활주로까지 변경하면서 하는 입장에, 그게 7구역인가 6구역이지요, 롯데타워 같은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아닙니다. 거기는 구역 밖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구역 밖이에요? 그런데 왜 활주로를 변경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롯데월드는 비행안전구역 밖에 있지만 정부 개발 협의에 따라서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군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군이 계속 쫓겨나잖아요. 계속 도심에 있다 보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 줄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공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직접적 당사자인 공군이 반대하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비행안전구역 자체가 재산권의 침해는 받지만 비행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군은 그렇게 해 달라는 게, 당연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들은 거고요. 공군의 입장을 국방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 높이는 지켜 줘야 된다라는 게.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도 이 법은 앞으로 계속될 텐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 차원이든 공군 차원이든 그다음에 한미 간이든 이를 완화하는 방향 그리고 실제 비행 안 하는 지역을 그냥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장주를 그려 놓고 여기는 아예 절대 안 가는 지역인데도 그냥 그려 놓고도 거기에 고도제한을 딱 걸어 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국방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육군 차원에서 민통선이라든가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많이 전향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넣어 보거나 논의를 해 보면 공군의 활주로와 관련돼서 고도제한에 관련된 부분은 철통이에요. 물론 위험성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FAA 규정에 따라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공군에서 자체적인 어떤

안전도를 검토하고 하면서 국민 친화적으로 그 고도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의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주에도 보면 영주안정비행장이 있는데 비상활주로예요. 45년 동안 비상활주로라는 이유로 아예 그냥 다 규제가 돼 있어서, 영주시와 풍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재산권 행사가 45년간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몇 번 왔느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훈련을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대요. 그것도 앓는 게 아니고 그냥 로우패스로 해 가지고 쭉 지나가는 게 끝이야. 그 훈련한다고 지금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시에 쓸 비상활주로거든. 그런데 제가 보니까 16년에 한 번 하고 4년 전인가 한 번 앓았대요, 거기에. 전투기가 한 번 앓은 적이 있고 시민들이 몰라 가지고 모인 적이 있고 나머지는 훈련하는지도 몰라, 그냥 계속 공 패스 돌고 가는 거야. 그런데 45년간을 국가에서 아니면 군에서 재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양일간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기호 위원 마무리 발언을 저도 한번 주시면……

○소위원장 부승찬 쉽은데요.

(웃음소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 주세요.

○한기호 위원 아까 한국광복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본래 1914년에 대한광복군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대한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1940년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한’으로 전부 다 광복군, 대한독립군 했는데 한국광복군이 1940년도에 후발 주자로 생긴 거는, 앞에 ‘한국’이 붙은 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김선호

법무관리관 홍창식

기획관리관 김경욱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강정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오성식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비나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박세호

공군본부

기지발전과장 최철호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김석기

현충시설정책과장 김동현